

준비서면

사 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
원고(항 소 인) 김 명 호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귀
원의 2006. 10. 10.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증인 정봉화, 배형주 신청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절차에서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들이 모두 사실이고 따라서 피고의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모두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수학과 학과장으로서 수학과에서 제출한 각종 징빙자료를 직접 수집, 작성한 정봉화 교수 및 제9호증의 9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당시 수학과 4학년생으로서 95학년도 1학기 위상수학1 과목에서 원고로부터 낙제점수(F)를 받아 학교 측이 마련한 보충강의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배형주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2.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학칙 제35조는 「① 학생은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예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사에 관한 내규 5. 성적평가는 「① (평가방법)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표시하되 시

험 성적, 출석 상황, 과제보고서 및 평소의 학습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칙 및 내규에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성적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방식이라 하여도 자의적인 성적 부여를 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칙에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예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평가표는 1995년 2학기 논리학 성적기록표의 예와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성적기록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의적인 성적평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점수를 일괄적으로 부여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출석·과제 및 시험성적 등 제반 성적평가 요소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습니다.

① 1991학년도 2학기 위상기하학 : 24명 수강생중 물리학과 학생 1명(F부여)을 제외한 23명 전원에게 A+ 등급 부여. 특히 22명에게 96점을 일괄적으로 부여, ② 1992학년도 2학기 위상수학2 : 10명 수강생 전원에게 B 등급 부여. 특히 전원에게 82점을 부여, ③ 1993학년도 2학기 위상수학2 : 20명 수강생중 3명(A+ 부여)을 제외한 17명 전원에게 B+ 등급 부여. 특히 17명에게 일괄적으로 85점을 부여함.

3. 을 제3호증의1 기재와 관련하여 원고 징계사건의 재심청구에 관한 변명자료 중 누락된 95 내지 99쪽, 128 내지 131쪽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입 증 방 법

- 1. 을 제20호증의 1, 2
- 1. 3, 4
- 1. 5
- 1. 6
- 1. 을 제21호증

각 교원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요구서

각 제1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결과보고 및 회의록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결과보고

교원인사기록카드

학사에 관한 내규

2006. 11. .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 재 원



정 재 응



서울고등법원 제2권사부

귀중